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

3. 주요내용

가.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
신설 (별표2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30. ~ 2024. 1. 9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차. 법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) 1차 위반 300 2) 2차 위반 500 3) 3차 이상 위반 1,000	법 제80조제1항제6호	
카. 법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,000	법 제80조제1항제6호	
타. 법 제7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,000	법 제80조제1항제6호	
파.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, 개인투자조합, 창업기획자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,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,000	법 제80조제1항제7호	

별표 2 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	법 제80조제1항제5호	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1) 1차 위반		300
2) 2차 위반		500
3) 3차 이상 위반		1,000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726